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산먼지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지 명령 기간 명시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산먼지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지 명령 기간 명시	2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4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비산먼지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지 명령 기간 명시

개정안은 비산먼지 규제를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중지 명령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④ (생략)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 ----- ----- -----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u>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3조¹⁾에서는 비산먼지²⁾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제조·가공

1)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업, 건설업 등의 사업³⁾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때 사업자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행·개선명령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대한 사업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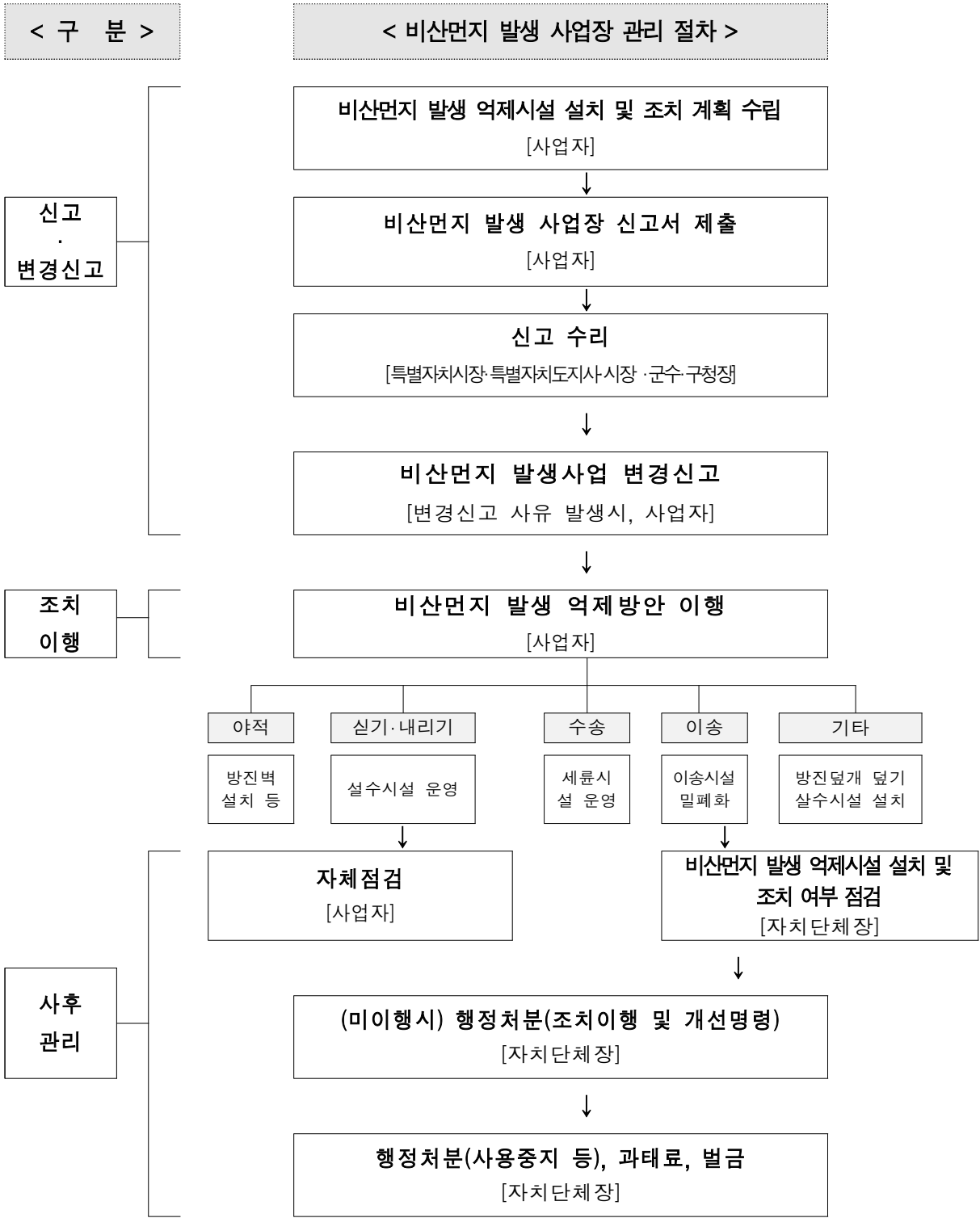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말하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라고 총칭함.

3) 2024년 기준 44,715개소 신고, 건설업이 77%(환경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체계]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비산먼지 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제한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의 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같은 법 제38조의2⁴⁾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및 제44조⁵⁾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의 경우에도 법률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36]⁶⁾에서는 비산먼지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4) 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아니한 경우 또는 ③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법 제43조제5항7)에서는 조치의 이행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에 대하여만 사업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사용중지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7)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8) 관할 행정청에서 사용중지 처분(약 150건/년) 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환경부)

*인용조문 맞지 않으나 미정비 상태(법 제43조제4항)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제2호 다목 2) 발췌

[비산먼지 발생사업 점검 현황(2022~2024)]

(단위 : 개소, 만원)

연도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과태료	고발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 미이행	기타	개선 명령	경고	사용 중지	조치이행 명령		
'24	33,572	3,393	1,602	1,610	144	1,146	1,520	152	557	74,870	788
'23	35,897	3,594	1,627	1,821	176	1,185	1,640	142	560	122,948	946
'22	37,840	3,762	1,995	1,731	109	1,298	1,567	125	741	97,249	832

자료: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36